

# 特許協力條約 (P C T) 概要

## < II >

— 承 前 —

### ④ PCT의 特徵

① 單一國際出願으로 多數國에의 출원과 同一 效果를 얻을 수가 있다.

② 대체로 自國語로 국제출원을 할 수가 있다. 즉 PCT에 加盟하여 自國特許廳이 國際調查機關이 되면 자국어로 국제출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파리條約에 의한 優先權을 主張하여 各國에 출원할 경우는 原則적으로 各國의 公用語에 따른 출원을 第1國에의 出願日로부터 12個月 以内に 출원해야 되나 PCT에 의할 때는 指定國 公用語로의 翻譯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提出하면 無妨하다. 또 PCT에 의한 번역제출기한까지에는 國際調查報告를 入手하게 될 것이므로 出願人은 그에 따라 新規性 進歩性 등에서 출원을 再評價할 수가 있으며 그 結果 그 국제출원을 그대로 維持與否를 判斷할 機會가 賦與된다. 이 판단에 의거 스스로 不必要한 출원이나 번역문 제출을 抑制할 수가 있으며 指定料의 納入이 優先日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지정료를 節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國內에서 處理 못하는 經費, 勞力の 節減도 期待할 수가 있다.

④ 국제조사보고 내용을 보고 請求範圍의 補正機會를 掴탈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適切한 청구범위의 보정을 함으로써 各國에서 特許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늦게 되며 各國마다 보정할 手酷을 덜 수도 있다. 더우기 國際段階에서의 보정은 審査國, 無審査國을 不問하고 各國 特許의 均質化가 可能하며 第三者로부터의 攻撃에 견딜 수 있는 強한 特許를 얻을 수가 있다.

⑤ 國際豫備審査를 이용할 때는 그 청구가 우선일부터 19개월 이내일 때는 번역제출기간이 5개월 더 延長된다. 따라서 早期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입수되면 그 결과를 보아 보다 正確히 出願繼續 與否를 판단할 수가 있으며 청구범위의 精確한 보정도 가능하다.

⑥ PCT에서는 各國이 PCT의 規定보다도 출원인에게 不利한 方式과 내용을 要求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PCT를 이용하여 PCT의 要件에 適合한 국제출원을 해두면 국내단계에 옮겨져서도 이같은 점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⑦ 國內特許廳으로서의 국내단계에서의 심사 에 국제조사보고와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이용할 수가 있다. 국내단계는 國內法에 의거한 심사를 하게되나 兩報告는 特許국의 수고를 덜게 되어 審査能率의 向上, 심사기간의 短縮 등으로 출원인의 利益에도 連結될 수가 있다.

또한 國際公開를 자국어로 출원하게 되면 그 대로 국내공개를 하게끔 制度를 마련하여 公報發行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⑧ 국제출원은 국제조사보고와 더불어 국제공개에 붙인다. 따라서 競合되는 技術에 關與하는 者에게는 그 출원에서 發生하는 特許의 權利範圍를 豫測시킬 수 있으므로 企業은 그 開發活動, 營業活動에 대한 意思決定의 중요한 情報源으로서 국제공개를 이용할 수가 있다.

PCT에서는 國際事務局에서 국제출원과 국제조사보고를 一括하여 공개하고 출원발명의 要約은 英文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정보원으로서의 국제공개의 利用價値는 더 한층 큰바 있다.

⑨ PCT의 料金體系는 매우 複雜하다. 第1章의 節次에 있어서도 受理官署의 手數料가 되는 發送料, 국제사무국의 수수료인 基本料와 指定料 등의 國際料, 국제조사기관의 수수료가 되는 調査料가 필요하다. 더우기 기본료는 出願書類의 枚數에 따라 다르며 지정료는 指定國 數에 따라 다르다.

또 국제출원을 1~2通만 제출시키는 수리관서에서는 謄本作成 費用을 출원인에게 負擔시키기도 하며 국제조사기관이 多發明으로 認定할 때는 追加調査料를 부담시킬 때도 있다. 또한 국내철차로 移行할 때는 국내수료를 各國마다 納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料金の 納付處와 納付

期限에 따라 각각 差異가 있으며 失手하면 출원이 却下되거나 出願日이 앞당기게될 수도 있다.

⑩ PCT국제출원은 국제단계의 절차를 거쳐 국내단계에 移行하나 그때에 國際手數料를 납부하는 것이 常例이다. 국내절차에는 조사를 위한 특허청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심사절차는 現行 國內節次와 비슷할 것이며 국제단계에서 출원절차를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비는 一律적으로 輕重을 評價할 수도 없으며 PCT를 경비면만으로 따질 수 없는 특징도 있다고 봐야 한다.

⑪ PCT는 書類 등 그 절차가 簡便하다고는 할 수 없다. 確實性이나 責任上, 또는 多數國 妥協의 產物인 多數國間條約이므로 不得已한 면도 있는 하다.

⑫ PCT에의 절차는 출원을 비롯해서 모든 受理官署,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서류 등을 現實의 受理日로 하여금 수리일이 되는 이른바 到達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⑬ 최초로 自國을 포함한 다수국을 지정하여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면 한번 출원으로서 다수국에의 출원을 끝낼 수가 있다.

그러나 먼저 국내출원을 한뒤에 그 優先權을 주장하여 몇 外國을 지정한 국제출원을 하거나 이들 외국에 나라마다 종래와 같이 출원한 경우를 생각하면 출원일을 權利의 起算日로 하는 외국은 權利의 終結이 약 1년간 늦어 진다.

## ⑤ PCT에의 節次

PCT의 節次規定은 극히 昭詳하므로 主要 줄거리만 紹介한다.

### ① 國際出願

PCT의 主眼은 同一發明에 대해 多數國에 각각 特許를 出願하여 그 특허출원을 受理한 各國內官署에서 각각 調査, 審査를 하는 非經濟, 非能率을 國際協力으로 改善하려는데에 있다 하겠다.

PCT는 파리同盟條約內에서의 特別條約이며 파리동맹조약의 効力を 조금이라도 變更시키지 않을뿐더러 파리조약국은 PCT조약국이 될수 있다. PCT의 國際出願은 PCT締約國의 國民 또는 居住人이면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締約國의 國民 또는 거주인이 아닌 파리동맹조약국의 국민이나 거주인에 대하여 PCT締約國의 總會에서 국

제출원의 權利를 賦與할 수도 있다.

국제출원은 다수국에 각각 출원하는 대신 一定樣式과 內容을 滿足시키는 單一出願을 수리관서중의 한곳에 출원함으로써 指定國에의 출원효력을 얻게 된다. 출원인이 保護를 받으려는 나라는 국제출원시에 지정국으로서 願書에 記載해야 한다. 이같은 지정은 締約國의 1이상의 나라에 가능하나 지정국이 유럽特許條約이나 아프리카·말라가시특허조약 등의 廣域特許條約에 加盟하고 있을 경우는 그 나라에서 廣域특허조약에 따른 출원으로 取扱을 希望하여 지정할수도 있다.

또 PCT는 特許協力條約이라고는 하지만 지정국이 發明者證, 實用新案 등의 制度가 있을 때는 지정국에서 이같은 보호를 받기 위한 출원으로서 취급되도록 희망하여 지정해도 무방하다. 국제출원을 수리하는 수리관서는 原則적으로 각국의 특허청이다.

국제출원은 국내출원이나 다른 국제출원에 의거하여 파리동맹조약에 정하는 優先權을 주장할 수가 있으므로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을 하려면 原出願日부터 12個月 以內에 출원해야 된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국제출원도 있으나 이경우의 優先日이란 국제출원일이라고 定義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그 期限들은 우선일로부터 몇개월이라는 식으로 정하고 있다.

수리관서가 이 국제출원을 수리한뒤 最少限의 條件이 充足되어 있으면 국제출원의 출원인 자격이 인정되고 정해진 言語로 쓰여진 동시에 국제출원이란 表示와 1個國 以上の 指定國 表示, 明細書와 클레임이 있으면 適法한 국제출원으로서 출원일이 정해진다.

출원일이 정해지면 각 지정국에서 그 날짜로 사실상 국내출원한 것과 같은 效果가 있다고 看做한다. 출원일이 賦與된 국제출원의 寫本은 記錄原本으로서 국제사무국에 調査用 寫本으로 국제조사기관에 각각 발송된다.

이 段階에서 중요한 일은 기록원본이 所定期限인 우선일부터 13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取下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리관서에서는 方式審査도 하며 不備한 것은 1~2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출원인에 補正시킨다. 출원인이 이 기간안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